

## 보도자료

2011년 12월 16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 (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재욱 주무관 (750-2514) dongto@kcc.go.kr  
와이브로활성화팀 조병현 사무관 (750-2541) 224e6970@kcc.go.kr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
- 이용자 보호규정 강화
-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16일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며,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 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 이상으로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변경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심사기준의 예측성을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10.24일 위원회 보고)하여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1.1일~11.21일),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12.14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끝.

< 참고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및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2·3항)

- (개정사유)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요금감면 서비스 추가 지정 및 대상자 확대 필요
- (개정내용) 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②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포함
  - \*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1,054만명('11.10월말)으로 총가구수(1,738만) 대비 점유율이 60.6%에 달함
- (기대효과)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및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부담 경감
  - 인터넷전화 사용 77만 가구가 연 215억원(가구당 27,922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55천명이 연 57억원(1인당 103,636원)으로 연간 총 272억원의 감면효과 발생

### 2]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기술인력 등록요건 완화(안 제28조 별표2)

- (개정사유)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시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완화 필요
- (개정내용) 자격 취득이 상대적으로 쉽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된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를 기술인력 요건에 추가
- (기대효과)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별정2호, 별정4호)의 등록 부담 경감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고졸자의 취업기회 확대\*도 기대
  - \* '10년도 기능계자격증 합격자 총 40,687명 중 32,637명(80.2%)이 만 16~18세(고등학생에 해당)

### 3] 무선재판매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안 제31조제1·2항)

- (개정사유)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관 변경 시에는 재등록·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시점과 다른 부당한 약관에 대한 관리 수단 마련 필요
- (개정내용) 별정통신사업자(별정1호, 별정2호, 별정4호) 중 무선재판매 사업자(이하 "MVNO"라 함)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경우,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규제를 최소화 하고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MVNO에 한해 적용
- (기대효과) MVNO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

#### 4 이용자 피해 확인 절차 마련(안 제44조, 제45조 별표4)

- (개정사유) 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무단가입, 부당과금 등)를 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개정내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 보존과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를 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고, 그 이행기간을 신설
- (기대효과)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이용자 권리 구제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촉진

#### 5 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51조의2제3항)

- (개정사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심사기준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할 필요
- (개정내용) 심사기준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기통신설비 보안대책의 적정성, 국내외 기술기준과의 적합성' 등으로 구체화 하여 규정
- (기대효과)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요청하는 사업자에게 심사 기준의 예측성 제고